

의안번호	2201571
의 퇴 인	임종득의원
회 답 일	2024.8.29.
추계번호	24B1822
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30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330억원(연평균 66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8조)	330	—	—	—	—	330	66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철도노선 및 사업구간의 연장 변화로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기본방향)	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여야 함 1. 충청남도,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여객·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.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. 충청남도,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.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	의무규정
2	안 제8조 (기본계획의 수립)	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1.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수요 예측 2. 철도 건설의 경제성·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.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. 공사 내용,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	의무규정 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5.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.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. 환경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8. 지진 대책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3	안 제10조 (실시계획의 승인 등)	제9조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, 사업 구역, 사업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12조 (주변지역개발사업)	시·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, 지정·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5	안 제13조 (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)	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둠(제1항)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 의무규정
6	안 제14조 (비용부담)	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(제1항)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(제2항)	의무규정 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 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추계현황
1	안 제3조(기본방향)	×	- (미첨부3호) 제정안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비용과 주변지역개발사업 비용 및 재원부담,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건설지역, 시·종점 등이 미확정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,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	안 제1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		
	안 제12조(주변지역개발사업)		
	안 제13조(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)		
	안 제14조(비용부담)		
2	안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- (추계)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¹⁾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제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, 국가 및 지방자치단

1)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(2024.4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6	2.2	2.2	2.1	2.1	2.1	2.0

체의 지원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,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,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
- 제정안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에 추가검토 사업²⁾으로 반영되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이후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임
 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지역, 시·종착점 등이 미확정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로 기본방향(안 제3조)·실시계획의 승인(안 제10조)·주변지역개발사업(안 제12조)·안 제13조(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추진단)·비용부담(안 제14조) 등에 따른 관련 소요비용을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조문 중 현재 추계가 가능한 안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추산하며, 최근 시행된 유사한 철도건설사업 비용에 준하여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(안 제8조) 본 추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최근 시행된 유사사례 철도건설사업의 연장당 기본계획 평균수립비용을 활용하여 추산함
 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전체 연장당 기본계획수립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
 - (총사업연장)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 상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구간의 총연장은 322.4km³⁾
 - (단가) 기본계획수립비용은 수립시점 비용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2026년 기준 km당 1억 240만원으로 계산됨

2) * (추가검토 사업)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

3) 참고자료에서 관련 사업개요 확인

[표 2] 유사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비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구간 (연장,km)	기본계획수립비용 (연도)	기본계획수립비용 (2026년 기준 환산)	연장당 수립비용 (2026년 기준 백만원/km)
남부내륙철도 (단선전철)	117.9	11,675 (2019)	14,038	119.1
강릉~제진 (단선전철)	111.7	8,000 (2020)	9,549	85.5
평균비용(백만원/km)				102.4

- 이상 추산한 평균 단가를 바탕으로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에 반영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연장(322.4km)에 대한 기본계획수립비용은 330억원으로 추산됨

[표 3] 유사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비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구간 (연장, km, A)	기본계획수립단가 (2026년 기준, 백만원, B)	기본계획수립비용 (A×B)
중부권동서횡단철도	322.4	102.4	33,002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철도노선 및 사업구간의 연장 변화로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기본계획 수립비용	33,002	-	-	-	-	33,002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계획(안)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□ 사업개요 (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 기준)

- 사업목적 : 중부권 동서연결 단절구간 해소로 교통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동서축 철도망 구축
- 사업내용 : 서산~울진 322.4km 단선전철
- 추가검토 사업 (24개 사업 중에 포함)

*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

노 선 명	사업구간	사업내용	연장(km)
인천2호선 안양 연장	인천대공원~안양	복선전철	21.8
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	신내~남양주	복선전철	—
서울2호선 청라 연장	홍대입구(까치산)~청라1)	복선전철	—
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	방화역~검단~김포2)	복선전철	—
경강선 연장	삼동~안성	단선전철	59.4
별내선 의정부 연장	별가람~탑석	복선전철	8.7
조리금촌선(통일로선)	삼송~금촌	복선전철	17.8
교외선	의정부~능곡	단선전철	28.9
인천신항선	월곶~인천신항	단선전철	12.5
경원선	연천~월정리	단선전철화	29.3
전주김천선	전주~김천3)	단선전철	101.1
점촌안동선	점촌~신도청~안동	단선전철	47.9
보령선	보령~조치원	단선전철	82.1
내포태안선	내포~태안	단선전철	57.6
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	동익산 신호장~완주산단	단선전철	11.4
중부권 동서횡단선	서산~울진	단선전철	322.4
창원산업선	창녕 대합산단~창원	단선전철	46.3
구미산단선	사곡~구미산단	단선전철	8.3
대산항선	석문산단~대산항	단선전철	18.6
의성영덕선	의성~영덕	단선전철	71.9
원주춘천선	원주~춘천	단선전철	50.7
마산신항선	마산~마산신항	단선전철	13.3
태백영동선	제천~삼척	복선전철	125.4
군산목포선	군산~목포	복선전철	121.0
계			1,256.4

- 주 1. 대장항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
 2.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
 3.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,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

자료: 국토교통부,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: 2021~2030년」, 2021.6.

□ 추진현황

- '16. 6 :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부구간*만 반영
 - * 아산·석문산단~합덕간 단선철도(L=36.5km)
- '16. 3 :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협의체 구성(충남·북 경북 12개 시·군)
 - * 12개 시·군 협의체(충남 천안·서산·당진·예산·아산, 충북 청주·괴산, 경북 문경·예천·영주·봉화·울진)
- '16.12~ : 12개 시·군 공동 연구용역 시행(교통연구원, '17.10월 중지)
- '17.4~7 : '지역공약사업' 및 '국정운영 5개년 계획' 반영
 - * 서산~천안~청주~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
- '17.12 :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(3억원) '18년 예산에 포함
- '18. 5~'19. 4 :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
- '21. 7 :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(추가검토사업)

□ 노선도

